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96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안 제5조 및 안 제7조)
- 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육·홍보(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5. 검토의견

- 최근 신림역 인근에서 범인이 흥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는 범인이 자동차를 몰고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흥기로 9명을 찢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모두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됨
- 본 조례안은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 안 제2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정의에 대해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신고체계의 마련과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 안 제8조에서는 해당사업의 위탁에 대해
 - 안 제9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지정 및 설치·운영에 대해
 - 안 제8조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사회전반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제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